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32

2025.9.8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의일·발의자: 2025. 8. 28.(목) 광양시장

나. 회부일: 2025. 8. 29.(금)

다. 상정일: 2025. 9. 8.(월)

-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**“원안의결”**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○ 공·사유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림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목적과 정의 **(안 제1조 ~ 제2조)**

○ 수수료를 적용하는 규모와 범위 **(안 제3조 ~ 제4조)**

3. 검토 결과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인 조례의 목적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이며, 상위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7명)

6. 기타 사항

○ 해당 없음.

붙임: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

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.

제4조(관리업무대행 수수료) ① 광양시장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,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